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노1104 판결 모욕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4노1104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도준(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K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고정1656-1 판결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모욕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F, G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댓글을 쓸 당시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닉네임만을 알고 있었을 뿐 그 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으므로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다.
- 2) 피고인이 올린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그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평가와 청렴평가가 신뢰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객관적인 기사를 근거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 가. 피해자 F, G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
- 1)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다68306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해자 F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이고 피해자 G은 같은 공단 E 직원이다.
- 나) 피해자 F은 2012. 6. 16. 18:12 인천 D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토론방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M"라는 제목으로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글에 대해 'N'이라는 닉네임으로 "그럼 니 어미 먼저 포괄수가 해보고 좋아하면 하자, 이 개 씹 젖 같은 봉지부 새끼야"라는 댓글을 올렸다.
- 다) 피해자 F은 2012. 6. 19. 11:24 다음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O"라는 제목의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다음 날 '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F 왜 근무시간에 인터넷질이야? … 너 E팀장이 냐?..."는 댓글을 올리고, 이어 'Q'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보복부 건강보험공단 경기도 수원 서부 지사 E부장 F씨…"라는 댓글을 올렸고 뒤이어 국민건강보험 E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에서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던 사람들의 소속과 이름이 댓글의 형식으로 올라왔다.
- 라) 피해자 G은 2012. 6. 19. 15:30경 인천 검단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R'이라는 닉네임으로 "S"라는 제목으로 포괄수가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T'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다음 날 9:19경 "국민건강보험공단 E G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근무시간에 인터넷질이라니요. 공무원이 이러시면 안되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피해자 G이 쓴 위 글과 기타 여러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올리고, 이어 'U'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도 "G, 국민건강보험 주임, 경희대학교에서 V 전공, 연애중, 여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위 글과 기타 여러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올렸다.
- 마) 피고인은 2012. 6. 19. 16:00 피해자 G이 쓴 위 게시글에 대하여 "등신아 퍼센트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우리.."라는 댓들을 쓰고 같은 날 17:00경 위 댓글에 대해 피해자 G이 댓글을 쓰자 다시 "등신같은 보슬

년아…무식하면 닥치고 보슬짓이나 해 명 청한 년아"라는 댓글을 썼다.

바) 피고인은 2012. 6. 21. 다음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이 올린 건강보험공단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에 대하여 "이년아 평균 연봉 5000이 아니라 5200이겠지? 그리고 거기다 각종 미친듯한 20종 수당을 다 더하면 6000이잖아 어디서 개구라질이냐 쓰레기같은년"이라는 댓글을 썼다.

-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G의 이름, 직장 등 신상정보가 피해자 G이 쓴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올라온 것은 2012. 6. 20. 9:19분 이후인데 피고인은 그 후 위 게시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 의 댓글을 쓴 것이므로 피고인이 댓글을 쓸 당시에는 피해자 G의 이름, 소속 등 신상이 다음 아고라 자유게 시판을 통해 알려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댓글을 쓸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G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경우 같은 날 피해자 F이 쓴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형태로 피해자 F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F의 닉네임 외 피해자 F을 특정할 만한 다른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쓸 당시 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고,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다.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 1) 국가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준국가기 관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의 업무나 정책을 비판하는 글에 다소 저속한 부분이 있다거나 일부 경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글의목적과 내용, 글을 쓰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속한 표현이나 경멸하는 내용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쉽게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경멸하는 내용과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주된 목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일부 직원들의 청렴성과 관련된 각종 부정행위나 비리의 고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리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체글 중 상당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 보도한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이를 읽을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파일 주소를 알리며 그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일부 저속하고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 1. 다음아고라 G 게시글 및 댓글, 다음아고라 URL 캡쳐자료
-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1.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7.경 인천 서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 (agora.media.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인 피해자 F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 가제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그럼 니 어미 먼저 포괄수가 해보고 좋아하면 하자. 이 개씹젖 같은 봉지부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인 바, 위 2.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이 악성 솔잎 혹파리들이 다 쳐먹고 있다는 거 (중략) 파리 가 파리채를 피하듯, 바퀴벌레가 구두발을 피하듯... 저 동먹는 개같은 버리지들은 자기가 싼 똥을 덮으려고 합니다. (중략) 포괄 수가로 국민 의료비를 후려치면 돈을 버는 곳이 두곳 있습니다. 바로 건보공단과 민영실손보험회사죠! (중략) 저 더러운 배때기들을 서로서로 빵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략) 할렘 봉지부! 할렘 씹평원! 할렘 건 뽕공단!"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최근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략) 개쓰레기 돈벌 레 범죄조직이라더니 오늘은 갑자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직이라니.. 이거야 원.. 페이스 오프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는 어느 장난에 맞추어 춤을 취야 하는거지? 개수작 좀 그만합시다. 건뽕공단님"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위 2.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한홍 표현덕